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0158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685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0158 판결

전 문

원 고 한국도로공사

可 고 1. 주식회사 A

2.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7. 15.

판결 선고 2016. 9. 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030,8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3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0,8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원고 소유의 B휴게소 및 C휴게소(이하 'A그룹'이라 한다)와D휴게소 및 E휴게소(이하 'B그룹'이라 하고, A, B그룹을 통틀어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관한 운영권 및 휴게소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A그룹에 대하여는 F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B그룹에 대하여는 G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각 컨소시엄(이하 '피고들 컨소시엄'이라 한다)으로 2014. 9. 12. 원고에게 인수의향서(이하 '이 사건 인수의향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A'라 한다)는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입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피고 A는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계약체결기한인 2014. 10. 31.까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1. 4. 피고들에게 '2014. 11. 14.까지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12,061,662,000원(낙찰금액의 10%) 또는 계약 체결 거부시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 6,030,831,000원(낙찰금액의 5%)을 납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것'임을 통지한 후,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2014. 11. 19.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낙찰자 지위 상실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해 이를 즉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안내문(이하 '입찰안내문'이라 한다)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대비 5%로 하되, 입찰 시는 그 납부를 면제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유의서(이하 '물품입찰유의서'라 한다)제6조 제2항은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이 귀속되고,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3, 14, 16, 21호증, 을가 1호증, 을나 5,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기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6,030,830,850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그납부기한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인 2015. 3. 17.까지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 입찰참가로 인한 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피고 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휴게소를 낙찰받았으므로, 피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인수희향서에는, 컨소시엄의 명칭이 'F 주식회사'(A그룹) 또는 'G주식회사'(B그룹), 컨소시엄 대표자가 '주식회사 A 대표자 J', 컨소시엄 참가자가 '주식회사 A,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컨소시엄 대표자인 J의 서명과 컨소시엄 참가자인 주식회사 A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법인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입찰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주식회사 A 대표자 K'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K의 전자서명만 있을 뿐, 피고 컨소시엄의 명칭이나 그 대표자인 J의 이름,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상호 어느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컨소시엄의 대표자인 J이나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자서명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안내문, 물품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유의서'라 한다), 기타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인수희향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인수희향서 제출 후 컨소시엄의 탈퇴·변경 또는 입찰 불참이 금지되거나, 컨소시엄 탈퇴·변경 또는 입찰 불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 제1, 2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원고의 전자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대표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구성원 별로 각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명시된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A는 위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했으나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한 적이 없고, 피고 컨소시엄의 대표자인 J은 원고에게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사이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3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법 제48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상법제48조 제1항 전문), 피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A가 피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들 컨소시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윤선, 판사 홍성균